

# 수수료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

제정: 2018.08.20.

개정: 2019.04.08.

개정: 2023.12.19.

전부개정: 2026.03.30.

(목차)

제1조 (목적)..... 3

제2조 (적용범위)..... 3

제3조 (수수료의 종류)..... 3

제4조 (수수료의 부과 기준)..... 4

제5조 (수수료의 부과 절차)..... 5

제6조 (투자자문수수료)..... 5

제7조 (투자일임 수수료 체계)..... 5

제8조 (투자일임 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 6

제9조 (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6

제10조 (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 6

제11조 (설명의무)..... 6

제12조 (수수료의 고지)..... 7

제13조 (투자광고)..... 7

제14조 (공시)..... 7

부 칙..... 7

[별지 1]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8

[별지 2]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9

[별지 3]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1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주식회사 화인자산운용(이하 “회사”라 한다)이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과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금소법, 금소법 시행령 등(이하 “관련법규”)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의 종류)**

이 기준에서 “수수료 등”이라 함은 회사가 집합투자업과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보수 및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로서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각 목과 같다.
  - 가. 집합투자업자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으로 운용보수와 성과보수로 구분한다. 운용보수는 운용기간 동안 받는 일정한 금전을 말하고,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 규정 제4-65조 등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산정된 방식에 따라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나. 판매회사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다.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의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 마. 집합투자재산평가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2. 수수료 : 투자자가 부담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판매,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수수료, 투자자문계약 및 투자일임계약에 적용되는 수수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판매수수료: 판매회사가 집합투자증권 판매의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으로서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

- 나. 환매수수료: 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집합투자기구를 환매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안정성과 환매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집합투자기구에 편입된다.
- 다.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기본수수료: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자문 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수수료와 후취수수료로 구분한다
- 라.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 또는 계약 해지일에 계약 자산을 평가하여 계약체결시점에 투자자와 사전에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 마. 투자일임 중도해지수수료 :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 이전에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중도해지 할 경우 사전에 약정된 패널티를 적용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 기준)**

- ① 회사는 수수료 등의 금액 또는 비율을 정함에 있어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수수료는 운용자산 및 계약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 ③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 비용과 수익의 수준 및 새로운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에 적용되는 세부적인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성과보수는 법 제86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 그 내용을 해당 투자설명서(투자제안서 포함)와 집합투자규약에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 2. 판매보수와 판매수수료는 동법 시행령 제77조 제4항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환매수수료는 환매금액 또는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환매대금을 지급할 때 이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령함으로써 해당 투자자가 부담하며 수령한 환매수수료는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된다.
- ⑤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2>의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 ⑥ 회사가 투자자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3>의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 ④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자문계약자산 혹은 투자일임계약자산의 규모 및 거

래 실적 등에 따라 고객과 협의한 별도의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절차)**

- ① 투자자문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별지2>의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 ②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절차는 <별지3>의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한다.
- ③ 회사가 집합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받는 각종 수수료 등의 비율 또는 금액, 그 부과절차는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는 회사의 상품개발 절차에 따라 개최되는 상품개발위원회(위원장: 마케팅업무 담당 부서의 장, 위원: 운용, 운용지원, 컴플라이언스, 리스크관리, 마케팅/세일즈 담당 부서장)가 상품의 특성 및 업무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 결정하며, 상품과 관련된 유가증권신고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해야 한다.
- ⑤ 회사는 집합투자기구의 수수료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⑥ 회사는 총비용의 조절 또는 적절한 배분을 위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집합투자기구의 관련 회사와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투자자문수수료)**

- ①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문수수료를 납부한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자문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 ③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④ 성과수수료는 법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시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일임 수수료 체계)**

투자자는 회사와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수수료 지급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수료율은 회사의 수수료 정책을 기본으로 투자자산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기본수수료만 지급(이하 “기본형”이라 한다)
- 2.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를 지급(이하 “혼합형”이라 한다)

- 3. 성과수수료만 지급(이하 “성과형”이라 한다)

**제8조(투자일임 성과수수료의 수령기준)**

회사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기준지표 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 나.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보수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 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9조(증액 및 감액, 중도해지 등)**

- ①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② 투자일임계약이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또는 순자산 총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 ③ 계약의 중도해지시 해당계약과 관련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미경과 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투자자에게 반환한다.
- ④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받은 때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 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10조(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

- ①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간은 1년으로 한다.
- ② 투자일임 기본수수료는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투자자가 동의할 경우 CMS 출금이체를 통해 투자일임수수료를 납입할 수 있다.

**제11조 (설명의무)**

회사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에 따라 일반금융소비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 제12조(수수료의 고지)

회사는 법 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3조(투자광고)

회사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금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공시)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 이 기준을 한국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9년 04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26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투자자문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로부터 20 년 월 일까지

2. 투자자문재산 금액 : 원

3. 투자자문수수료

기본수수료: 투자자문재산 원본의 연 %(부가세포함) : 원

성과수수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9조의 2에 따른 제한의 범위에서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자문수수료 지급시기 및 입금계좌 :

기본수수료는 계약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자문 담당자 :

6. 거래증권회사 계좌

거래증권회사명 :

계좌번호(계좌명) :

주문담당자 및 연락처 :

주문담당자 E-Mail :

7. 고객에 대한 통지 장소 (우편 또는 E-mail 중 선택 가능)

주 소 :

전 화 :

팩 스 :

E-Mail :

8. 기타사항

연체 수수료 및 중도해지 수수료 없음

[별지 2]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1) 수수료 체계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투자자문계약서에 따른 투자자문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기본수수료는 투자자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투자자문계약에 따른 투자자문수수료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은 회사의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르며,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문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2) 수수료의 납입 및 계산기간 등

- ①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연1회 선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투자자문 기본수수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 ③ 투자자문 성과수수료는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투자자문 수수료 산정방법

회사의 투자자문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부과되는 전체 수수료체계는 아래와 같다(성과보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한 바에 따라 부과한다).

수수료 부과 기준표

구분	수수료구분	수수료율	지급 구분
투자자문계약	기본수수료	계약자산의 연 1.0%	선취
	성과수수료	목표수익률 연 5.0%를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의 20%	만기 또는 해지 시에 지급

- ① 성과수수료의 지급 :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연5%를 초과하는 경우 성과수수료가 지급되며 그 한도는 연5%를 초과한 수익의 20% 이내로 한다.
- ② 높은 투자위험 노출 :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높은 투자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 ③ 성과수수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수익률이 목표수익률 연5%를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성과수수료는 기준지표에 연동하여 산정한다. 다만, 고객과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⑤ 성과수수료를 산정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계약자산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중도해지시에는 목표수익률 연 5.0%를 경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한다.

[별지 3]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8조, 금소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하여 투자일임수수료의 계산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율)

1. 투자일임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나눈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1%로 한다.
3. 성과수수료는 Hurdle Rate인 연 6%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0%를 적용한다.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기존의 손실을 만회한 이후의 자본계약에 기초한다. 또한, 계약기간 중 계산재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증액 또는 감액되는 재산에 대한 재산 수익률은 “갑”이 “을”로부터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다.

▶ 수수료율 재산

계약금액	운용수수료	성과수수료
고객 일임재산	연 1.0%	Hurdle rate 연6.0% 초과분의 20.0%

제3조(투자일임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1. 투자일임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연장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계약기간중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투자일임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3. 계약기간중 일부 또는 전부 해지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한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X 1% X (운용일수 / 365)]

4. 성과수수료 발생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후취 일시납으로 하며 투자일임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점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 (평가자산의 계산)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매도가격 평가 : 한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증가.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일에 형성된 증가로 평가한다.
2. 기타자산: 고객과 합의된 가격
3. 미실현 이익의 평가
  - 1)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모주 등)는 편입 단가로 계산한다.
  - 2)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 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한다.
  - 3) 주식배당, 유·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 제5조(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

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한다.

#### 제6조(지침의 변경)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투자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